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71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2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3월 31일, 이용균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5년 4월 2일

다. 상정일자: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4월 2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이용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,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보완하며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용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(안 제2조제3호).
-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명시(안 제3조제2항).

- 지원계획에 실태조사 결과 반영(안 제3조2제2항).
-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보완(안 제4조제4호, 제5호).
-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 마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,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임.
-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는 수집·관리인 선정시 그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.

다만, 현행 제1호~제3호와 달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안 제9조는 수집·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시 복지실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 및 안전장비 지원,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포함한 ‘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¹⁾’을 시행하고 있는바, 중복 여부 및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.

1) 서울시, 폐지수집 어르신 3,007명...일자리 전환 유도 등 지속적 지원책 추진해 나간다(보도자료, 24.07.10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촉진에 이바지함”을 “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,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”(이하 “수집·관리인”이라 한다)이란 재활용품을 수집·운반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
2.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
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4.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

-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시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4.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
5.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있으며,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(협조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·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<u>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,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</u>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“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”(이하 “수집·관리인”이라 한다)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”(이하 “수집·관리인”이라 한다)이란 재활용품을 수집·운반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</u></p> <p><u>2.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</u></p> <p><u>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</u></p> <p><u>4.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</u></p>

②·③ (생략)

제3조의2(실태조사)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4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자료요청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정하는 사항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

5.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6. ----- 구청장 -----

제8조(자료요청) ① -----

----- 있다.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<신 설>

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
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
한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수
집·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
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
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
협력하여 수집·관리인의 근로환
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
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